

## ●환경부령 제1153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인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2항”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서류의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야 하는 정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 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 현장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